

에이치엘성수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<정관 신규대조표>

1차 개정 2025.10.22.

조항	개정 전 (제정)	개정 후 (1차 개정)
제9조 (주식의 종류)	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으로 한다.	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의결권 있는 <b>보통주식과 의결권 있는 제 2 종 종류주식</b> 으로 한다.
제 9 조의2 (종류주식의 내용과 수)	[신설]	<p>①회사는 이천만주(20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2 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제 2 종 종류주식은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연 [3.1]%로 한다</p> <p>③ 회사는 이익배당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p>1.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 주당 발행가액에 제 2 항의 우선배당률을 곱하여 그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2.제 1 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④어느 사업연도에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 3 항에서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,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 2 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하되,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p>1. 제 2 종 종류주식의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2. 제 1 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업연도에 관해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계산된 배당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3. 제 2 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⑤ 청 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잔여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</p>

		<p>재산은 현금화하여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.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,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다.</li> <li>제 1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, 청산시까지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4 항에 따라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.</li> <li>제 2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모두 분배한다.</li> </ol> <p>⑥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, 제 2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
제25조 (주주의 의결권)	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.	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<b>및 제 2 종 종류주식</b>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제 27 조의2 (종류주주총회)	[신설]	<p>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상법 제 435 조 제 2 항에 따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채택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</li> <li>상법 제 344 조 제 3 항에 의거,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, 주식의 병합·분할·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·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</li> <li>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, 주식교환,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제 1 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</p>
부 칙 제1조 (시행일)	[신설]	이 정관은 2025 년 10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명란</p>	<p><b>발기인 대표 정 미 영</b> [630914-2646018]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53 길 8, 325 동  1403 호(상도동, 래미안상도 3 차아파트)  인수 주식수 : 보통주식 [20,000]주</p> <p><b>발기인</b> 케이원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 [110111-5597715]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6, 319 호  (자곡동, 빌리브파비오더까사)  대표이사 임 동 훈  인수 주식수 : 보통주식 [28,000]주</p> <p><b>발기인</b> 김 동 현 [760826-1063223]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4 로 46,  209 동 2702 호  (식사동, 위시티일산자이 2 단지아파트)  인수 주식수 : 보통주식 [12,000]주</p>	<p><b>에이치엘성수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</b>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 호  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  대표이사 정 미 영 (인)</p>
--	---	--